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⑪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§7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25p 경감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100%,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 10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p>☞ 현행 3년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취득세 25p 경감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100%,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 100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
< 개정내용 >

- (①,②)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,
 - 국가 귀속 예정인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하여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(50% 또는 100%) 적용하도록 재설계
 - ※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정비
- (③)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교통 편의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정비
- (④,⑤) 국민의 교통 편의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
 - ※ (도시철도공사)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연장(2026.1.1. 적용 → 2029.1.1. 적용)
 - [부칙(법률 제15295호, 2017.12.26.) 제7조]
- (⑥)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
- (⑦)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검사소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사고 예방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
- (⑧) 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 물류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,
 -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, 비수도권, 인구감소지역에 차등을 두어 감면율 재설계